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 상한 기준 도입〉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41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 상한 기준 도입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2.
3. 회부연월일 :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분산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 상한 기준 도입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생략) ⑤·⑥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에-----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4제6항에-----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본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가맹점에 대한 매출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병원까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¹⁾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을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바,²⁾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례³⁾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참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률에서 가맹점의 연 매출 상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2025.10.29.) 회의록 참조

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2025.9.1.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 ▶ (원칙)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
- ▶ (예외)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
 - ❶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 * (예시) 농민수당·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정책발행 상품권
 - ❷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판매자’인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플랫폼형 사업장은 예외 인정
 - ※ 매장 자체는 비영리 성격, 개별 농민·소상공인이 직접 수익을 취하는 경우여야 함
 - ❸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25.6월 기준) 內 농협 농자재판매장
 - ❹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지역(‘25.6월 기준) 內 농협 하나로마트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6.) p.8.

개정안의 취지는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최초 가맹점 등록 시 연 매출 상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상인이 이후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3년) 안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갱신을 신청⁴⁾하는 시점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 ④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

에 등록갱신 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맹점 등록과 관련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개정안 시행 당시 연 매출 상한 기준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취약상권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 효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⁵⁾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 상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등록된 가맹점이 매출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3.9만개('25.7.22. 기준, 노점 및 사업자번호 미등록자 제외) 중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1,048개임(3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570개, 50억원 초과 478개).